조함으로써 언론의 본질성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

나)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다)일간신문이나 방송의 책임정도와는 다른, 인터넷 언론들까지도 다른 매체와 동등하게 다룸으로써 인터넷 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도 앞으로는 정식 언론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기존의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점도 있다.

라)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시정권고의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데다가 시정권고 기능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의 우려가 있다.

Ⅸ. 사례

1. <과학기술부가 대구 · 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4. 6. 3.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영남권의 연구개발 허브 기능을 담당할 대구 · 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추진 과정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경과기원은 지난해 11월 범영남권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는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졸속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2일 설립위원을 위촉한 뒤 한차례 상견례만 갖고 경상북도 추천위원인 김시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관을 통과시켰다. 과기부는 또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미국출장으로 인해 5월 20일로 예정된 대경과기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경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대구 · 경북과기원이 설립초반부터 삐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정관의 심의 · 의결은 설립위원들의 권한이며, 김시중 위원은 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할 당시부터 해외출장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과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김시중 위원의 서면의견 제출을 고려하여 정관을 심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경과기원의 설립위원회 간담회 일정은 설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경북도지사 해외출장으로 간담회 참석이 어렵다는 것과 경북도에서 간담회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설립위원회에 보고됐으나 이의근 지사 대신에 부지사의 참석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5월 20일로 간담회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 게재됨.

2. **<충청남도 전직 공무원이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장 등으로 일하면서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처리결과 : 합의

접 수 일 : 2004. 3. 16.

보도내용

충청남도가 심대평 지사의 퇴임한 측근들을 지나치게 챙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심 지사의 고교 동창 및 선배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가 하면, 70대 노인을 산하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장기간 앉혀 놓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다.

도는 최근 김 모 전 정무부지사가 2002년 2월부터 회장으로 있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 조 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또 김 회장은 심 지사와 고교 동창으로서 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뒤 2000년 12월 퇴임했다.(중략)

이 단체는 그동안 별다른 활동없이 사무처장 등 직원 4명의 월급과 회장 판공비 등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회장은 도 산하 장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오찬규 의원은 두 단체의 판공비를 합치면 부지사 때의 판공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심대평 지사가 고교 동문들로 하여금 거액의 연봉을 지급받게 하려고 정실인사를 하여 신청인을 장학회 이사장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임명하게 한 것이나 조모 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심 지자의 정실인사가 아니며 조모 씨는 도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다.

또 장학회 이사장이나 협의회 회장은 각각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연금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지사 때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후략)

합의사항

반론보도문 게재

서울신문은 지난 2월 14일자 6면 『공무원 그만둬도 철밥통 그대로』 제하의

기사에서 김 모 전 충남 정무부지사가 충남도의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으로 일하면서 부지사 때보다도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위 두 자리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월급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부지사는 충남도가 조 모씨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사례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은 2003년 5월 개관한 조두남 기념관과 관련, 경남도민일보측이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조두남 선생의 친일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마산시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인 문제로 시정(市政)을 비난한 언론보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2004년 4월 8일 마산시와 황철곤 마산시장이 경남도민일보와 비난기사 작성기자 및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친일의혹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념관 건립을 막기 위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피고들의 행동이 위법행위로 평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Ⅹ.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가운데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언론중재제도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95%를 넘었다.